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066호
2025년 4월 2일
수요일

공 고

- | | | | |
|-----------------|--------------------------------|-------------|----|
| ○ 공 고 제 7 1 6 호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자 동 차 관 리 과 | 2 |
| ○ 공 고 제 7 1 7 호 | 소유주 미장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 자 동 차 관 리 과 | 4 |
| ○ 공 고 제 7 2 4 호 | 「남동구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도 시 디 자 인 과 | 12 |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716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2. 공고기간 : 2025. 4. 2. ~ 2025. 4. 17.
3. 공고대상 : 42모2439 외 22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 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032-453-2827)

2025. 4. 2.

남 동 구 청 장

운행정지 자동차현황(2025년 3월 2차)

구분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42모2439	Golf 2.0 TDI BMT	최**	2025.03.29	소유자 요청
2	109서2555	Mercedes-Benz A 220	메**	2025.03.28	소유자 요청
3	110더9629	A6 45 TFSI	폭**	2025.03.27	소유자 요청
4	153하2785	Jetta 1.4 TSI	폭**	2025.03.27	소유자 요청
5	381두7085	Mercedes-Benz GLE 450 4MATIC	하**	2025.03.26	소유자 요청
6	195구1584	A6 40 TDI	폭**	2025.03.25	소유자 요청
7	177소5015	Explorer 3.3 FHEV	폭**	2025.03.24	소유자 요청
8	220어4853	크루즈 1.8 DOHC	박**	2025.03.24	소유자 요청
9	172호3963	G70 슈팅 브레이크 (G70 SHOOTING BRAKE)	신**	2025.03.24	소유자 요청
10	269다5752	Q7 45 TDI quattro	폭**	2025.03.24	소유자 요청
11	224조5902	A6 40 TDI	폭**	2025.03.24	소유자 요청
12	26두3604	Q4 e-tron 40	폭**	2025.03.24	소유자 요청
13	22주0971	재규어 XF 2.2D	정**	2025.03.20	소유자 요청
14	41호0512	Model 3 Long Range	삼**	2025.03.19	소유자 요청
15	160하3663	K5	삼**	2025.03.19	소유자 요청
16	175하1113	스포티지	신**	2025.03.18	소유자 요청
17	109조5240	Mercedes-Benz A 220 Sedan	신**	2025.03.18	소유자 요청
18	313루5857	A7 55 TFSI quattro	폭**	2025.03.18	소유자 요청
19	257러5931	A7 55 TFSI quattro	폭**	2025.03.18	소유자 요청
20	153허2731	A6 45 TFSI	폭**	2025.03.18	소유자 요청
21	372라7768	A6 40 TDI	폭**	2025.03.18	소유자 요청
22	332보3581	A8 L 55 TFSI quattro	폭**	2025.03.18	소유자 요청
23	145호8267	Touareg 3.0 TDI	폭**	2025.03.18	소유자 요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717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 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 4. 1.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04.02. ~ 2025.04.17.
3. 공고대상 : 이륜차 22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최초확인일	견인일	보관장소	비고
1	2024-00256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독곡로60번길 26-22 앞 도랑	2024-10-28	2025-01-06	(주)인천폐차사업소	
2	2024-00259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역로30번길 43	2024-11-08	2025-01-16	(주)인천폐차사업소	
3	2024-00260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역로30번길 43	2024-11-08	2025-01-16	(주)인천폐차사업소	
4	2024-00261	번호판 없음	삼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앵고개로948번길 54 춘천애닭갈비 건너편	2024-09-30	2025-01-16	(주)인천폐차사업소	
5	2024-00262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역동로 2-15	2024-09-24	2025-01-16	(주)인천폐차사업소	
6	2025-00003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문화서로4번길 35-18	2024-11-29	2025-01-09	(주)인천폐차사업소	
7	2025-00005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문화서로4번길 35-18	2024-11-29	2025-01-09	(주)인천폐차사업소	
8	2025-00035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로 320 뒤편 주차장	2024-09-09	2025-02-28	(주)인천폐차사업소	
9	2025-00020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포구로 57	2024-12-26	2025-02-14	(주)인천폐차사업소	
10	2025-00022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선수촌공원로23번길 10-21	2025-01-02	2025-02-14	(주)인천폐차사업소	
11	2025-00036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주대로522번길 44 앞	2025-01-02	2025-02-28	(주)인천폐차사업소	
12	2025-00037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하로 497-28 지하1층	2025-01-14	2025-02-28	(주)인천폐차사업소	
13	2025-00038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하로 497-28 지하1층	2025-01-14	2025-02-28	(주)인천폐차사업소	
14	2025-00039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주대로518번길 24 앞	2025-01-14	2025-02-28	(주)인천폐차사업소	
15	2025-00064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고개로123번길 45-1 앞	2025-01-22	2025-03-27	(주)인천폐차사업소	
16	2025-00065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로 633 지하주차장	2025-02-05	2025-03-27	(주)인천폐차사업소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수취 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최초확인일	견인일	보관장소	비 고
17	2025-00066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풀무로 11	2025-03-05	2025-03-27	(주)인천폐차 사업소	
18	2025-00019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서로33번길 44	2024-12-23	2025-02-06	주식회사 한신편차	
19	2025-0002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경인로 626 리더스타워 B동 2층 주차장	2024-12-26	2025-02-06	주식회사 한신편차	
20	2025-00023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말로9번길 4 앞	2024-12-24	2025-02-06	주식회사 한신편차	
21	2025-00040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주대로 725	2025-01-16	2025-02-26	주식회사 한신편차	
22	2025-00042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경인로 778 앞 삼각지	2025-01-31	2025-02-26	주식회사 한신편차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과 린 면 하	2024-0025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4-10-28 ○ 견 인 일 : 2025-01-06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시 남동구 득곡로60번길 26-22 앞 도로
	2024-0025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4-11-08 ○ 견 인 일 : 2025-01-16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역로30번길 43
	2024-0026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4-11-08 ○ 견 인 일 : 2025-01-16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역로30번길 43
	2024-0026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4-09-30 ○ 견 인 일 : 2025-01-16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앵고개로948번길 54 춘천애닭갈비 건너편
	2024-0026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4-09-24 ○ 견 인 일 : 2025-01-16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역동로 2-15

관 리 면 이	2025-0000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4-11-29 ○ 견인일 : 2025-01-0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문화서로4번길 35-18
	2025-0000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4-11-29 ○ 견인일 : 2025-01-0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문화서로4번길 35-18
	2025-0003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4-09-09 ○ 견인일 : 2025-02-2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로 320 뒤편 주차장
	2025-0002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4-12-26 ○ 견인일 : 2025-02-14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포구로 57
	2025-0002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5-01-02 ○ 견인일 : 2025-02-14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선수촌공원로23번길 10-21

관 리 편 의	2025-0003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5-01-02 ○ 견 인 일 : 2025-02-2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주대로522번길 44 앞
	2025-0003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5-01-14 ○ 견 인 일 : 2025-02-2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하로 497-28 지하1층
	2025-0003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5-01-14 ○ 견 인 일 : 2025-02-2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하로 497-28 지하1층
	2025-0003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5-01-14 ○ 견 인 일 : 2025-02-2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주대로518번길 24 앞
	2025-0006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5-01-22 ○ 견 인 일 : 2025-03-27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고개로123번길 45-1 앞

차 리 관 리 이	2025-0006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5-02-05 ○ 견 인 일 : 2025-03-27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로 633 지하주차장
	2025-0006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5-03-05 ○ 견 인 일 : 2025-03-27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풀무로 11
	2025-0001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4-12-23 ○ 견 인 일 : 2025-02-06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포차 ○ 방치장소 : 만수서로33번길 44
	2025-0002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4-12-26 ○ 견 인 일 : 2025-02-06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포차 ○ 방치장소 : 경인로 626 리더스타워 B동 2층 주차장
	2025-0002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4-12-24 ○ 견 인 일 : 2025-02-06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포차 ○ 방치장소 : 구월말로9번길 4 앞

관 린 의	2025-0004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5-01-16 ○ 견 인 일 : 2025-02-26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인주대로 725
	2025-0004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5-01-31 ○ 견 인 일 : 2025-02-26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경인로 778 앞 삼각지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724호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2.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관 변경 심의 기준을 신설하여 우리 구의 내실 있는 경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관 변경 심의 기준 신설 (안 제2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별관 도시디자인과 / ☎ 032-453-2832, FAX 032-453-28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가. 「경관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나.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관 변경 심의 기준을 신설하여
우리 구의 내실 있는 경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관 변경 심의 기준 신설
(안 제26조제2항)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경관법」 제28조
- 「경관법 시행령」 제21조
- 「건축법」 제16조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사항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생략) <신설>	제26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u>경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사항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

[참고자료]

□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28.>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

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제6항 및 제14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